보 도 자 료

10.29(목) 14:00부터 보도 가능

작성부서	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		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	
책 임 자	권대영 과 장(02-2156-9710)		최성일 국 장 (02-3145-8300)	
담 당 자	고영호 서기관(02-2156-9711) 김영근 사무관(02-2156-9712)		이진석 부국장 (02-3145-8001)	
배 포 일	2015.10.29.(木)	배포부서	공보실(3145-5786, 5790)	총 6매

제 목 : 건전성 규제 선진화 방안

▶ 건전성 규제를 국제기준에 맞게 선진화
▶ 규제목적에 비해 규제수준이 과도하거나, 합리적 이유 없이 권역별로 차이가 나는 규제를 정비

1. 추진 배경

□ **'금융규제개혁 추진방향'**('15.6.15)에 따라 금융규제를 ①건전성, ②영업행위, ③시장질서, ④소비자보호로 **유형화**하고,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**개선**

○ 금융산업의 **경쟁과 혁신**을 제고하기 위해 **영업행위 규제**를 **완화**하되, **건전성·시장질서·소비자보호** 규제는 **강화** 또는 **정비**함으로써 규제 틀의 전체적인 **균형**을 유지

□ **금융협회·연구원**과 공동으로 **작업반**을 **구성**하여 1,064개 금융규제 중 152개를 건전성 규제로 분류하고, 이중 협회·연구원이 **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**한 **54개 과제**를 중점 검토

➡ **금융개혁회의**(10.14일, 10.29일)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**최종안 확정**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http://www.fss.or.kr)

2. 현행 건전성 규제 평가

가. 건전성 규제 국제 동향

□ **(은행)**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**바젤위원회**(BCBS) 주도로 **자본규제**와 **유동성규제**를 **강화**

○ **대마불사**(Too big to fail) 문제 해결을 위해 대형 은행에 대한 **회생·정리제도*** 정비를 추진

* 위기상황에서 금융회사를 **자체 회생**시키거나 공적자금 투입 없이 **질서 있게 정리**하기 위해 금융회사 또는 감독당국이 사전적으로 수립하는 계획

□ **(보험)** **국제회계기준위원회**(IASB)는 **보험부채**를 원가평가에서 **시가평가로 전환**하는 IFRS4 2단계를 '20년부터 시행할 예정

○ **국제보험감독자협회**(IAIS)는 '자체 위험·지급여력 평가제도(ORSA)'* 도입을 권고하는 등 **자본적정성 기준**을 **강화**

* 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 : 보험회사가 자체 리스크 및 내부 지급여력의 적정성을 스스로 평가하고, 감독당국이 그 적정성을 점검하여 필요시 추가자본을 부과하는 제도(은행권의 바젤 필라2와 유사)

□ **(금융투자)** **미국·EU** 등은 시스템리스크 유발 가능성이 큰 **대형 증권사**에 대한 **건전성 규제**를 **강화**하는 추세

□ **(금융그룹 통합감독)** **EU·일본** 등은 금융그룹에 대한 업권별 감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**금융그룹 통합감독**을 **강화**

나. 국내 건전성 규제 평가

□ **(은행)** 바젤위원회가 제시한 **국제기준을 충실히 이행**하고 있으며, **이익준비금**과 **예대율** 등 일부 규제는 **독자적**으로 시행

○ **이익준비금** 적립 제도*는 이익금을 포함한 보통주자본 전체를 직접 규제하는 **바젤Ⅲ 자본규제**와 **중복**되는 측면

* 은행의 이익준비금이 자본금 규모에 달할 때까지 매년 순이익의 10% 이상을 내부유보토록 하는 제도

○ **예대율** 규제는 **과도한 대출증가를 억제**하기 위해 '12.7월 도입되었으나, 선진국의 도입 사례가 없어 **과도한 규제**라는 **지적**이 있음

□ **(보험) 연결기준 지급여력제도**(RBC) 도입, **부채의 시가평가, 자체 위험·지급여력 평가제도**(ORSA) 도입 등 건전성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보험사의 **지급여력 확충**이 **중요과제**로 대두

○ 현행 **자금차입 규제**가 다소 **엄격***하여 후순위채·신종자본증권 등 **보완적 자본**을 통한 지급여력 확충에 **애로**

* 보험회사의 자금차입은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, 적정 유동성 유지를 위한 경우에만 허용

□ **(금융투자)** 은행·보험권과 달리 **국제적인 단일 건전성 기준이 없어**, 우리나라는 주요국 사례를 참고하여 **순자본비율**(NCR), **레버리지비율** 등의 건전성 규제를 **도입**

○ **순자본비율**의 경우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**기업 신용공여**에 대한 **위험값**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

□ **(비은행)** 국제적인 건전성 기준은 없으나, **국제기구의 권고***를 반영하여 건전성 규제를 은행 등 타 권역 수준으로 정비할 필요

* '14.5월 국제통화기금(IMF) 등은 우리나라 금융부문에 대한 평가(FSAP)에서 비은행의 자산건전성 기준을 은행 수준으로 정비할 것을 권고

□ **(금융그룹 통합감독)** 주요 선진국에 비해 업권별 감독에 치중하고 있어, **금융그룹 감독시스템**을 **강화**할 필요

3. 개선방안

◈ **국제 감독기구**가 권고하는 건전성 규제를 **충실히 도입**하고, 국제 기준을 넘어서는 **과도한 규제를 정비**

◈ 권역별 특성을 고려하되 **합리적 이유 없이 차이**가 나는 건전성 규제는 합리적으로 **조정**

가. 국제정합성 제고

□ **(은행)** 시스템적 중요 국내은행(D-SIB) 규제, 완충자본규제, 바젤 필라2 규제를 **'16년**부터 시행하고 규제 수준을 **단계적으로 강화**

○ **회생·정리계획**(RRP)은 **'17년말** 도입을 목표로 세부방안을 마련하고, **레버리지비율**과 **장기 유동성규제**(NSFR)는 **'18년 도입** 추진

구 분	추진 현황	향후 계획
▪ 시스템적 중요 은행(D-SIB) 규제	규정·세칙 변경예고중	'16년 시행
▪ 자본보전 완충자본	규정개정 완료	
▪ 경기대응 완충자본	규정·세칙 개정작업 진행 중	
▪ 바젤 필라2	규정·세칙 개정작업 진행 중	
▪ 회생정리계획(RRP)	도입방안 마련중	'17년말 도입 예정
▪ 레버리지비율 규제	'15년부터 공시 실시	'18년 도입 예정
▪ NSFR(장기 유동성)	도입방안 검토중	'18년 시행 예정

□ **(보험) 연결기준 지급여력제도**(RBC), **자체위험·지급여력 평가제도**(ORSA)는 각각 **'16년**, **'17년** 시행을 목표로 준비

○ IFRS4 2단계에 대비하기 위한 **자본확충방안**, 원화대출약정 등 **난외항목**을 **신용공여** 범위에 **포함**하는 방안도 추진

구 분	추진 현황	향후 계획(목표)
▪ 연결RBC 제도	규정·세칙 개정작업 진행중	'16년 시행
▪ 자체위험·지급여력 평가제도(ORSA)		'17년 시행
▪ 자본확충방안 추진		'16년 시행(검토)
▪ 난외 익스포져 신용리스크 관리 강화		'16년 시행

□ **(금융그룹 통합감독)** '15년중 '금융그룹 감독체계 구축 기본방안'을 마련하고,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**'16년중 '모범규준' 제정 추진**

나. 권역별 건전성 규제 정비

□ 규제 목적 고려시 **규제수준**이 다소 **과도**한 규제를 **합리화**

○ **(은행) 예대율 규제**는 당분간 유지*하되 **외은지점**에 대한 규제 수준을 **완화****하고, 바젤Ⅲ 도입으로 실효성이 낮아진 은행법상 **이익준비금** 제도는 **폐지**

* '18년 장기 유동성 규제(NSFR) 시행방안 마련시 예대율 규제 존치여부 검토
** 계약만기가 1년을 초과하는 본지점 장기차입금을 예수금에 포함

○ **(보험) 지급여력 확충**을 제도적으로 **지원**하기 위해 **신종자본증권의 상시발행** 및 **후순위채권의 선제적인 발행**을 허용

○ **(금융투자) 종합금융투자사업자**의 기업 신용공여 관련 **위험값** 등을 합리적 수준으로 **정비**하고, '15.10월부터 신설되는 **전문사모운용사***에 대한 **건전성 규제**를 완화하는 방안 검토

* 사모펀드만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로, '15.10월부터 인가 없이 '등록'만으로 설립 가능

○ **(비은행) 상호금융**에 대한 **예대율을** 현행 80%에서 은행수준인 100%로 **단계적으로 상향***

* 향후 가계부채 추이를 보아가며 폐지여부를 검토

□ **규제차익**이 발생하지 않도록 **권역별 건전성 기준**을 **정비**

○ **(자산건전성 분류기준)** 대형 **저축은행** 및 **여전사**(일반대출)*의 연체기간에 의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**을 단계적으로 은행 등 **타 권역과 유사한 수준**으로 **조정**

* 여전사의 경우 가계대출·카드대출은 은행권과 동일하나 일반대출은 상이

**

구 분		저축은행	여전사 (일반대출)	⇨	은행·상호금융 ·보험·금투
연체기간	정 상	2개월 미만	3개월 미만		1개월 미만
	요 주 의	4개월 미만	6개월 미만		3개월 미만
	고정이하	4개월 이상	6개월 이상		3개월 이상

○ **(신협 법정적립금)** 신협의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법정적립금 **적립 한도**를 농·수·산림조합 수준으로 **강화***하고, **손실금 보전**** 목적으로 **사용**할 수 있도록 개선 추진

* (현행) 출자금의 2배가 될 때까지 매년 이익금의 10%이상 적립
→ (개선) 출자금의 **3배**가 될 때까지 매년 이익금의 **20%이상** 적립

** 사업연도 중에 생긴 손실금을 미처분잉여금, 특별적립금, 임의적립금, 법정적립금의 순으로 보전(농·수·산림조합과 동일)

[별첨] 건전성 규제 선진화 방안